

순환자원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‘26년도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’ 공고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‘순환자원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 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1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1 사업목적

- 신청서 작성 및 시험분석비용 부담 등으로 인증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을 통해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5조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 도모

2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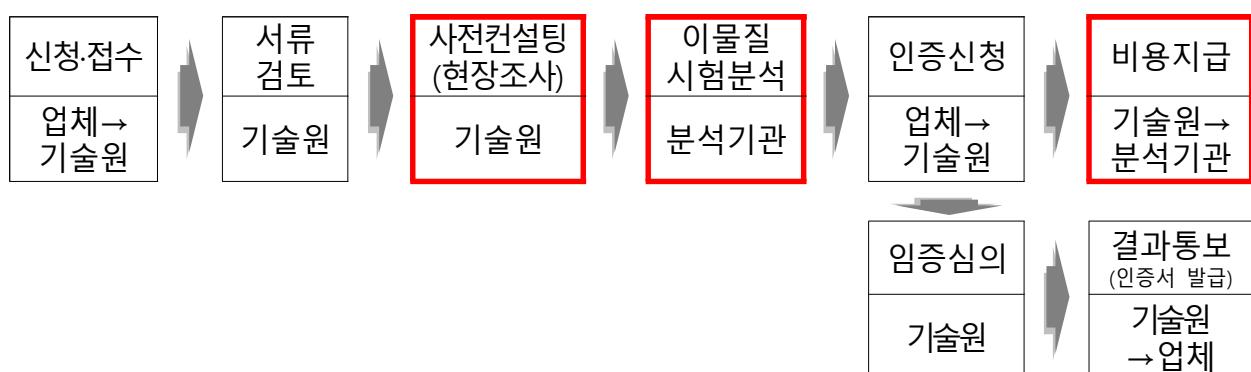
- (사업명) ‘26년도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
- (지원근거)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41조(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)
 - ※ 시험분석 소요비용이 1백만원 초과한 경우 소요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
- (지원대상) 순환자원 지정·고시 업체로 ‘26년도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 업체
 - * 동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※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하되,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 신청 기업과 연계된 경우 우선 지원
- (지원기간) 공고일 ~ ’26.10.31.*
 - *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

- (시험분석비 지원규모) 총 20백만원(기업당 최대 1백만원*)
 - * 시험분석 소요비용이 1백만원 초과한 경우 소요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
 - ※ 기술원 사전컨설팅 및 분석기관 시험분석 이후 기술원이 분석기관에 분석비용 지급
- (지원내용)
 - 사전컨설팅 : 순환자원 관련 제도 안내,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제출서류(신청서, 품질유지 관리 및 사용 계획서 등) 작성 지원, 기타 제도 혜택 등 안내
 - 시험분석 : 사전컨설팅 이후 실시한 이물질 시험분석 소요비용 지원
- (신청방법) 지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(순환자원 지정·고시 등록 확인 서류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중소기업 확인서 등) 제출

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
- (지원기간) 공고일 ~ '26.10.31.*
 * 시험분석비용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(신청방법) 온라인 신청
 - 이메일 주소 : bykim@keiti.re.kr, csy603@keiti.re.kr
- (신청서류) 지원 신청서 및 증빙자료(순환자원 지정·고시 등록 확인 서류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중소기업 확인서 등) 제출

4 지원절차



- (신청서 제출·접수)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(업체), 신청서 접수 및 검토(기술원)
- (서류검토) 자격요건, 신청서류, 제한대상 여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(기술원)
- (사전컨설팅) 기술원 현장조사를 통해 공급망 확인, 순환자원 관리 실태, 인·허가 서류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인증 신청서, 품질유지 관리 및 사용 계획서 등 작성 지원
- (시험분석) 분석기관에서 「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」 별표 이물질 시험방법 등을 준수하여 순환자원 내 이물질의 기준치 이내 포함여부 분석 실시
- (인증신청)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출서류가 완비된 경우 업체에서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서 제출
- (비용지급) 기술원이 시험분석 소요비용을 분석기관에 지급

5 문의처

- (순환자원 품질인증 운영기관)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실
- ☎ 02-2284-1947, 1953 ☐ bykim@keiti.re.kr, csy603@keiti.re.kr

붙임 : 지원신청 서식. 끝.

[별지서식1]

순환자원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인 (수령인)	기업명			
	대표자명			
	주소			
	법인등록번호			
	사업자등록번호			
	연락처 (담당자)	성명		부서(직위)
전화			휴대폰	
FAX			E-mail	
지정·고시 순환자원		동 지원사업 수혜여부	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	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시험분석기관 (예정)	(기관명)	(담당자)	(연락처)	

2026년도 '순환자원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'에 위와 같이 신청하며,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(수령인) :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【구비서류】

1. 순환자원 지정·고시 등록 확인 서류 1부.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증빙자료 1부.

사업 참여 및 의무이행 협약서

본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'기술원')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협약합니다.

1. (컨설팅 성실 이행)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순환자원 품질인증 사전컨설팅에 적극 협조한다.
2. (시험분석 및 인증신청) 기술원이 확인한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며, 시험분석결과 서류 발급 이후 30일 이내 순환자원 품질인증을 신청한다.
3. (시험분석비 지원 방식 동의) 시험분석비는 기술원이 본 업체를 대신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사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임에 동의하며, 시험분석 소요 비용이 기술원이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업체에서 부담한다.
4. (지원 취소 및 환수) 본 업체가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을 포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, 기술원은 시험분석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확인한다.

2026년 월 일

업체명 :

대표자 :

(직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[별지서식3]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기업명	성명 (소속/직책)	팩스번호	전화번호	휴대폰 번호	이메일 주소

- 개인정보 수집 안내 -

○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

- 본인 확인절차
- 고지사항 전달, 민원처리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, 선정결과 등의 안내
-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

○ 개인정보 수집 항목

- 성명, 전화번호(휴대폰, 전화번호), 이메일 주소 등

○ 개인정보 보유기간

-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'26년도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종료 후 파기

○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

-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 수집항목 중 필수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'26년도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신청인 :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